

고양 창릉 우미 린 그레니티 | 인지세 안내문

■ 인지세 안내

「인지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공급계약서,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,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각 균등 부담하며, **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주체는 인지세 분담액(50%)을 계약자의 분양대금 잔금에서 차감합니다.**

※ 계약체결 시, 구매한 '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' 사본(원본은 계약자 보관)을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인지세 납부안내

구분		내용
과세대상		부동산 공급계약서,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
납부기한·방법		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 - 분양계약 : 계약체결일 기준
인지세 납부금액		150,000원 (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구간) ※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사업주체는 인지세 분담액(50%)을 계약자의 분양대금 잔금에서 차감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온라인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접속 →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→ 전자수입인지 구매 후 출력
	오프라인	우체국, 은행(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) ※ 방문 전 해당 기관에 구매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수

※ 발급하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등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므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

온라인 이용방법(카드결제, 계좌이체 가능)

① 전자수입인지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'전자수입인지' 검색 후 접속

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

④ 구매 : 납부정보 입력

- 용도 : 인지세 납부
-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금액 : 150,000원
- 건수 : 1건
- 확인 후 결제



⑤ 출력

※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 (재발행 불가)



오프라인 이용방법(신분증 지참, 현금결제만 가능)

- ① 우체국, 은행 방문(방문 전 구매 가능 여부 문의) ②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 ③ 전자수입인지 발급

※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